



「부림·봉수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제안공모) 지침서

2023. 3.



경상남도 의령군

목 차

- I. 공모개요 3
- II. 제안공모 요강 5
- III. 건축설계 지침 12
- IV. 제안서 작성 및 제출 21
- V. 제안공모 심사 및 평가 27
- VI. 각종 서식 38

- <별지 제1호 서식> 응모신청서
- <별지 제2호 서식> 담당건축사 선임계
- <별지 제2-1호 서식> 공동응모 대표사 선임계
- <별지 제2-2호 서식> 대표자 선임계
- <별지 제3호 서식>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 <별지 제4호 서식> 공동응모 협정서
- <별지 제5호 서식> 청렴서약서
- <별지 제6호 서식> 각서
- <별지 제7호 서식> 사용인감계
- <별지 제8호 서식> 위임장
- <별지 제9호 서식> 설계공모 서면 질의서
- <별지 제10호 서식>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서
- <별지 제11호 서식>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 <별지 제12호 서식> 설계공모 제안서 표지
- <별지 제13호 서식>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별지 제14호 서식> 사전접촉 금지서약서
- <별지 제15호 서식>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 <별지 제16호 서식> 평가위원별 평가표
- <별지 제17호 서식> 입상작품 양도 동의서

I 공모개요

1. 사업목적

가. 의령군 봉수·부림면에 위치한 준공 후 25년 된 노후 농공단지이며, 농공단지 내 정주여건 및 인력유입에 대한 입주기업체들의 애로사항으로 부족한 문화·복지·편의시설에 대한 수요와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기숙사 수요에 대응하여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2. 사업개요

가. 사업명 : 「부림·봉수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 제안공모

나. 발주기관 : 의령군청(일자리경제과)

다. 사업위치 : 경상남도 의령군 봉수면 서득리 331-3번지

라. 부지면적 : 7,402.60㎡

마. 건축규모 : 1동, 지상 3층

바. 연 면 적 : 1,178.49㎡

※ 전체 연면적 내 주용도별 ±5% 조정 가능

세부시설 개요는 “시설별 면적 제시(안)” 참조

- 연면적 및 용도별 규모는 설계용역 착수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므로, 위 시설 면적은 확정 면적이 아니며, 설계 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사. 용도지역 : 일반공업지역 (건폐율 70%, 용적율 150%)

아. 주 용 도 : 근린생활시설 / 공동주택(기숙사)

자. 주차대수 : 50대 이상

차. 예정공사비 : 3,403,4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의 총 공사비이며, 각종 인입에 따른 분담금 및 인증비용도 공사비에 포함

(단,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제시된 공사비는 물가상승요인에 따라 추후 변경 될수 있음.

카. 예정 설계용역비 : 159,83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등 제반 분야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수행 등의 설계비 및 각종 인증, 행정절차 이행과 건축협의, 설계자문, 건축물 발주에 필요한 심의, 심사 등 발주처가 요구 및 필요한 자료작성 등 제반업무를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용역완료시 각종 증빙자료 제출)

※ 지질조사, 장애물없는 생활환경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 등 수수료는 별도

다. 설계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10일(국·공휴일 포함)

※ 각종 심의, 협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일수에서 제외 또는 과업중지될 수 있음.

파. 발 주 처 : 의령군청

- 담당자 : 일자리경제과 류지혁 (055-570-3112) ※ e-mail : swatryu@korea.kr

3. 설계공모 개요

가. 공모목적

- 부림·봉수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여 근로자의 복지환경 개선을 통한 직무 만족도 향상 및 기업·주민 간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고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상징성, 실효성, 공간적 우수성 등 창의적 아이디어가 담긴 설계안을 선정하고자 건축설계 제안공모를 실시함.

나. 공모방식 : 제안공모

- 본 사업의 경우 부지활용 및 세부 프로그램 등 주요내용을 설계자 선정 후 발주기관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해 설계 진행과정에서 설계안을 완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 본 공모에서는 완성된 설계안을 평가하는 ‘일반 설계공모’가 아닌 설계자의 경험과 역량, 업무에 대한 이해도, 아이디어,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기술한 제안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여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는 ‘제안공모 방식’으로 추진함.

II 제안공모 요강

1. 설계공모 방법

- 가. 공모방식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72호, 2021. 6. 21.)』 제2조제 7호에 의한 **제안공모**
- 나. 참가자격 및 조건
- 1)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
 - 2)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 자로서 동법 제9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3)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 및 자격정지,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업체이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응모할 수 없으며, 당선작 선정 후 의령군과 계약체결일까지 업무정지, 자격정지 및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이 없어야 한다.
 - ※ 응모신청서 접수시 국토교통부의 경력위탁기관인 건축사협회 등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첨부(공동응모자 포함)
 - 4) 공동응모 시 응모자 모두 1)항~3)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과반수 이상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며, 담당건축사는 대표자의 회사에 소속된 건축사여야 한다.

[단, 공동응모 시 2개사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시 건축사 사무소 등록업체의 주된 영업소가 경상남도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는 경상남도 소재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와 지분율 30%이상으로 공동 응모를 권장하며 응모신청서 등록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고, 공동 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하의 범위에서 구성 가능함(단, 구성원별 계약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함.)

 - ※ 응모신청서 등록 후에는 공동응모자를 변경할 수 없음(공동응모협정서 제출)
 - 5) 공동응모는 당선작으로 결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공동 계약을 의미함.
 - 6)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 2에 따른 외국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 협정을 한 자(이때, 주계약자는 국내 건축사로 하며 공동응모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7) 공동응모 협정을 하지 않은 참가자는 제안서를 접수할 수 없음.
- 8) 설계공모 당선자의 설계용역 계약에 따라 용역 완료시까지 토목, 기계, 전기, 소방, 통신분야 등을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해당분야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 다음의 분야별 설계적격자와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이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되어야 함. 다만, 당선자가 해당 분야 자격요건 충족 시 예외로 함.
 - 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전문설계업(전력전문설계 1종이상) 또는 종합설계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 등록을 필한 업체
 -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정보통신처리분야(정보통신)]를 등록한 업체
- 9) 본 설계공모 참가자는 1개의 작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응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 10) 본 공모사업 참가자는 「동동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설계 제안공모에 응모할 수 없다.(독점예방 및 설계 창의성 확보)

2. 설계공모 일정

가. 공모일정

구 분	공모일정	비 고
제안공모 공고	2023.3.22.(수)~3.28.(화)	지정정보처리장치 (나라장터 및 의령군 홈페이지)
참 가 등 록	2023.3.29.(수) [17:00까지]	접 수 처 : 의령군청 일자리경제과 직접 방문접수(온라인및우편접수불가)
질 의 접 수	2023.4.3.(월) [09:00~17:00]	·이메일: swatryu@korea.kr ※ 응모별 1회 한해 질의서 서식에 의한 서면 질의
질 의 회 신	2023.4.5.(수)	등록한 이메일로 회신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	2023.4.18.(화) [09:00~17:00]	제 출 처 : 의령군청 일자리경제과 제출대상 : 참가등록 업체에 한함. 직접 방문접수
제안서 발표 및 심사	2023.4.27.(목) [14:00(예정)]	장 소 : 의령군청 2층 회의실
심사결과 발표	2023.5.2.(화)	·당선자 서면 및 유선 통보 ·의령군청 홈페이지 게시
도 서 반 환	2023.5.3.(수)~5.11.(목)	

※ 상기 일정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의령군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 예정임.

나. 일정 등의 변경

- 1) 일정상의 모든 수속은 업무시간에 한다
- 2) 공모일정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변경된 일정은 응모신청시 기재한 팩스 또는 E-mail을 통해 참가등록한 모든 응모자에게 통지한다.
- 3) 설계공모 진행기간 중 응모자 주소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히 발주처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3. 참가등록

가. 등록일시 : 공모일정(표) 참조

나. 등록장소 : 의령군청 일자리경제과

- 1) 주 소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 2) 전화번호 : 055-570-3112

다. 등록방법

- 1) 응모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방문 접수**(E-mail, 우편, 팩스 등 등록불가)
- 2) 대리인이 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첨부

라. 구비서류

- 1) '응모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_A4> 1부
- 2) '청렴서약서' <별지 제5호 서식_A4> 1부
- 3) 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 (국외 건축사자격증 사본 1부 (외국건축사 참여할 경우에 한함))
- 4)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 1부 (법인인 경우 대표자 업무신고필증 사본)
- 5) '담당건축사 선임계' <별지 제2호 서식_A4> 1부
- 6) '설계공모 참여자명단' <별지 제3호 서식_A4> 1부
- 7) '공동응모 대표자 선임계' _ 해당 시 <별지 제2-1호 서식_A4> 1부
- 8) '공동응모협정서' _ 해당 시 <별지 제4호 서식_A4> 1부
- 9) '대표자 선임계' _ 해당 시 <별지 제2-2호 서식_A4> 1부
- 10) 사용인감계 _ 해당 시 <별지 제7호 서식_A4> 1부
- 11)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별지 제8호 서식_A4> 1부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하며, 소속직원 외 대리접수 불가)
- 1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사본 1부.
(외국건축사의 경우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의한 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 신고필증 사본으로 같음)
- 13)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 각 1부
※ 공동 응모자의 경우 해당 자격증 및 업무신고필증 등 상기 해당서류 각각 제출
※ 영문 및 외국어로 작성된 구비서류의 경우 한글로 번역하고 번역 업체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
- 14) 공고일 기준 행정처분 여부 사실조회서 1부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 발급)

마. 기타사항

- 1) 공동응모의 경우 공동응모 참여업체 분까지 포함하여 제출
- 2) 제출 사본은 원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4. 질의 및 응답

가. 접수일자 : 공모일정(표) 참조

나. 제출방법 : 본 설계공모의 지침서, 제공 서류, 기타 공모의 진행과 관련하여 서면 질의만 가능하며,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작성한 질의서를 E-mail에 의한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함.

다. 질의접수처 : swatryu@korea.kr

[의령군청 일자리경제과]

라. 유의사항

- 1) 질의서 발송 후 수신 여부를 유선(055-570-3112)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마감일 이전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 2) 질의서는 기간 내 접수해야 하며 질의는 참가자(업체)별로 1회에 한함.
- 3) 질의는 <별지 제9호 서식>만을 사용하여 명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서식과 상이한 경우 답변하지 않음.
- 3) 질의는 한글을 사용하여 명확히 작성하여야 함.

마. 질의회신

- 1) 일 시 : 공모일정(표) 참조 ※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 방 법 : 개별 통보(E-mail)
- 3) 유의사항
 - 접수된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후 답변내용을 모든 참가등록자에게 개별 통보(E-mail)함.
 - 질의사항에 대한 우리군 답변내용은 설계공모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메일 전송오류 등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질의자의 인적 사항 등 질의서상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질의, 질의내용이 설계공모 지침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회신하지 않음.
 - 질의내용에 따라 상부기관의 유권해석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회신기한이 연기될 수 있음.

6.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 공모일정(표) 참조

나. 제출장소 : 의령군청 일자리경제과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 위임장 소지한 대리인 제출 가능

라. 제출서류

1) 건축설계 제안공모 제안서 제출서 1부 <별지 제10호 서식_A4>

2)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1부 <별지 제11호 서식_A4>

- 실적관리 수탁기관 또는 발주기관의 증빙서류 포함

3) 설계공모 제안서 15부

▶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등) 금지

-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2작품 및 설명서

※ 담당건축사로 수행했던 작품이어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

- 수행계획 및 방법 부문

※ 제안서를 파손되지 않도록 백색포장지로 포장하며, 겹포장에 제출도서 제목을 기입, 심사용이라고 표기하고 업체(대표사) 직인 날인

※ 15부 중 1부는 제안서 표지에 업체명 기입하여 별도 포장하여 제출하고, 나머지 14부는 '의령군청 일자리경제과'로 표기

4) 발표자료(PPT)를 저장한 USB 1개

5) '설계공모 제안서(위 1)~3) 내용'의 내용을 저장한 USB 1개

(저장형식 : PDF)

※ 심사PDF 전자파일은 1개의 파일로 별도 저장하되 표지는 저장 시 제외

※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2작품도 별도 파일로 저장

※ 제안서 발표 시 제안서 내용을 수정하거나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사명, 로고, 마크 등) 등을 표기(식)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실격 처리됨.

6) 응모신청서 접수증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후 인감 날인

* 상기 서류는 입찰공고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각종 증명서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함.

7. 제안서 발표 및 심사

가. 심사일시 : 공모일정(표) 참조

나. 발표장소 : 의령군청 2층 회의실

다. 제안서 발표 / 심사

1) 발표시간 및 순서

- 발표순서는 당일 심사대상자의 추천에 의해 결정

- 발표시간 : 10분 이내 ※심사위원회에서 조정가능

- 심사위원 질의응답 시간 : 10분 이내 ※심사위원회에서 조정가능

2) 발표자 : 대표건축사 또는 대리인

- 대리인은 대표건축사 소속업체 직원이어야 하며, 당일 대리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3) 발표내용 및 방법 : PPT 발표

- 담당 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 수행계획 및 방법 제안서

(업무에 대한 이해도, 과제에 대한 제안, 수행계획)

- PPT는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으로 구성하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없으며, 심사위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축소 및 확대는 가능

라. 제안서 심사방법

- 응모업체가 7개를 초과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위해 1차 심사(서면 심사)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2차 심사(발표심사)를 실시함.

※ 1차심사 통과 작품 수 및 심사방법은 건축설계 제안공모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 최종심사는 심사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채점제를 원칙으로 하며,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투표제 등을 선택 및 병행할 수 있음.

8. 심사결과 발표 및 당선작 통보

가. 일 시 : 공모일정(표) 참조

나. 발표방법 : 당선자에게 E-mail 및 우편 통보, 의령군 홈페이지 게시

다. 입상작 시상

1) 입상작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우수작, 가작)으로 구분함.

2) 입상작은 심사결과 종합점수가 고득점 순으로 3작품 이내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함.

- 3) 당선작은 입상작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작품으로 결정함.
- 당선작(1점) : 기본 및 실시설계권 부여
 - 우수작(1점) : 상금 7,000천원 지급
 - 가작(1점) : 상금 4,000천원 지급
- ※ 응모 작품수가 4개 이하인 경우 당선작, 우수작만 선정
- 가) 가장 높은 점수를 득한 참가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수행계획 및 방법] 부분 중 과제에 대한 제안의 합계점수가 높은 자를 당선작으로 선정하며, 과제에 대한 제안 합계점수 동점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심사위원회의 표결을 통해 다득표자를 당선작으로 결정
 - 동점자 중 당선작 다음 차순위자를 우수작으로 결정
- 나) 가장 높은 점수를 득한 참가자는 1명이고, 차순위 동점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가)목과 동일한 방법으로 우수작 1점 결정
 - 동점자 중 우수작 다음 차순위자를 가작으로 결정
- 다) 당선작과 우수작 각 1명이고, 차순위 동점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가)목과 동일한 방법으로 가작 1점 결정
- 4) 기타 입상자(우수작, 가작)가 특별한 사유 없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모안의 작성비용에 대한 보상 요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Ⅲ 건축설계 지침

1. 일반사항

- 가. 모든 설계는 제시한 요구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 나. 관계법령 및 규정에 적합하고 이용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하고 누구나 이용이 편리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다. 부림·봉수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입주기업 근로자 및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문화, 휴게, 편의시설 등 합리적인 복지 환경을 제공 할 수 있는 공간 배치를 통해 토지이용의 효율성 극대화 및 관리·운영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건물을 조성한다.
- 라. 모든 설계는 제시한 사업비 내에서 현실적으로 시공, 제작설치 등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각종 자료와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마. 기존 기숙사와의 전반적인 계획(배치, 평면 등)을 확인, 검토하여 조화롭게 계획한다.
- 바. 대상지의 자연적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주변 환경 및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건물이 입지하여야 하며, 대상지의 지형, 지세 등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고, 가용공간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설계 방안을 제시한다.
- 사. 운영비를 최소화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대적 추세를 고려한 친환경 설계를 한다.
- 아. 지역특성, 디자인, 건물용도 및 기능에 부합하는 입면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자. 본 과업과 관련된 건축, 토목, 기계, 소방, 전기, 통신, 조경 등 타 분야와 긴밀히 협조하여 기능 유지에 적합하고 상호 연관성을 보장해야 하며,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BF),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에너지절약계획서, 신재생에너지, 건축물의 범죄 예방(CPTED) 등 설계가 반영되도록 계획한다.
- 차. 관련법규(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주차장법, 소방법, 전기·통신법 등)를 면밀히 검토하여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 카. 내부공간의 가변성과 외부공간의 활용(제안)을 고려, 공간의 융통성을 확보하여 미래의 사용상에 무리가 없는 계획을 고려한다.
- 타. 각 시설은 전기, 통신, 기계, 방재 등에 이르기까지 통합보안시스템 등 최신식 자동관리가 될 수 있고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
- 파.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 당선자는 심사위원회의 지적사항, 공공건축사업계획서 사전검토의견, 발주자의 요구사항, 상위계획(도시·군관리계획 및 제반되는 건축 심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등)변경 등에 따른 설계의 변경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조정 및 기본설계 수정·보완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2. 설계공모 주요지침

가. [건축계획] : 실용적이며 효율적인 건축

- 1) 각 실의 구성 및 공간의 분류는 참고기준으로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변화가 가능함. (층간변화 및 면적변화 가능)
 - 주용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건축
- 2)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건축
- 3) 가변적이고 융통성 있는 공간계획
- 4) 각 실별 연관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조닝(zoning) 및 평면계획 수립

나. [토지이용계획 및 조경계획] : 주변경관 및 환경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부지 조성

- 1) 자연친화적 조경 및 옥외 휴게공간 조성
- 2) 합리적인 토지이용으로 효율적이고 쾌적한 환경의 조성
- 3) 조경, 우·배수, 오·폐수, 부대시설 환경 고려 계획 조성

다. [설비계획] : 에너지 절감을 위한 첨단설비 구축

- 1) 경제적이며 관리, 운용이 간편한 효율적인 시스템 도입
- 2) 전기, 냉·난방, 전산, 정보, 통신, 소방, 방재, 기타설비 등

라. [에너지 저감계획] :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제로 에너지건축물 인증(5등급 이상)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 인증(BF) 취득, 신재생 에너지, 건축물 범죄예방 설계(CPTED)

3. 설계공모 세부지침

가. 설계의 주요점

- 1) 1면 도로에 접한 부지의 장점을 활용하여 공공시설의 상징성 확보 및 근로자,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고려한 열린 배치
- 2) 복합문화센터의 세부시설별 기능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하고 각 시설의 성격, 접근성,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각각의 층별로 적정하게 배치
- 3) 사용자 특히 여성, 어린이 및 노약자의 안전한 통행환경을 확보하고 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외부 공간 조성
- 4) 향후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증축 또는 가변적인 공간활용이 가능한 평면계획
- 5) 옥외 생활범죄 방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열린공간 계획 및 범죄예방 디자인 적용
- 6) 편리한 보행·차량 동선시스템 제공과 효과적 주차 동선계획 및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 7) 과도한 디자인이나 입면에 치우친 계획을 지양하고 주변시설과 조화되는 입면, 재료, 색채 계획
- 8) 공간 구성 및 실의 기능에 적합한 가구배치 계획 수립하고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 9) 쾌적한 시설환경 조성
 - 쾌적한 공간과 자연친화적 내외부 공간구성
 - 각 실의 효율적 배치와 적절한 Open Space 및 휴게공간 부여
 - 각 실별 채광면적 확보, 실별 용도에 맞는 적절한 조도 확보
- 10) 친환경적 설계
 - 자연에너지 및 자원의 최대한 활용
 - 환경 친화형 건축자재의 사용(석면자재 사용불가 등)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공공공간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녹색건축인증,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은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반영·취득할 수 있게 한다.
 - 친환경 자동차 대비 주차 계획시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검토

나. 주요 고려사항

1) 배치 및 동선계획

- 가) 건물 및 부대시설 배치는 향, 조망, 에너지 절약, 이용자의 편의성,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자의 창의성을 발휘하여 합리적으로 배치
- 나) 시설물 이용자의 특성(연령, 성별)을 고려하여 상층기능 분리 및 상호보완기능 인접 배치할 수 있도록 하며, 층별 / 기능별로 구분하여 효율적으로 배치
- 다) 출입구, 엘리베이터, 계단(경사로) 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일반이용자의 이용에 있어서도 불편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라) 건물 및 주차장 영역은 집약시키고, 외부공간(외부휴게공간, 다목적체육공간 등)을 조성하여 건축물 이용자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제안하여 배치
- 마) 주변 교통 여건을 고려한 진출입로 및 주차장 배치
- 바) 보도와 차도 및 주차장 계획은 이용성과 안전성이 우선되어야 하며,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을 분리하고, 부득이하게 교차부분이 발생시 완충 공간 확보 및 보행자 안전성 우선 확보
- 사) 주변현황 및 주변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
- 아) 시설별 배치는 기능성, 조화성 운영관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

2) 평면계획

- 가) 각 공간 및 이용자의 특성을 분석하여 유사영역은 인접 배치하고 각 영역별로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조화로운 공간계획 및 기능별 합리적 계획
- 나) 실의 형태 및 평면상 배치는 사용 용도에 적합하고 에너지 절약, 채광, 환기 등을 고려하여 구성
- 다)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는 공간과 소음으로부터 분리가 필요한 공간은 구분하여 합리적인 동선 및 시설계획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획
- 라)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 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하고 장애인과 노약자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

- 마) 편의시설은 다수의 사용자가 이용하므로 편리성, 인지성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계획
- 바) 체육시설은 다목적으로 이용 가능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
- 사) 청년창업 및 기업지원 시설은 다양한 콘텐츠의 청년창업 공간 마련과 세미나 및 홍보를 위한 회의실 구성
- 아)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는 교육 및 상담뿐만 아니라 근로자 간 소통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계획
- 자) 문화프로그램 운영장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가변형 칸막이벽, 창고 등 효율적인 공간이 되도록 구성
- 차) 전기실 등의 설비관련 공간은 통제와 관리에 효율적으로 배치
- 카) 이용자들의 동선이 파악될 수 있게 숨은 공간이 없도록 계획
- 타) 옥상 등 공간은 친환경 옥상정원을 조성하여 이용자의 휴게 공간을 계획하며, 방수에 대한 이중바닥, 식종류 등 사후관리를 고려한 설계를 하여야한다.

3) 입면계획

- 가) 공공건축물로서의 품격을 고려, 환경 친화형의 건축기법과 재료를 적용하고, 입지조건, 주변경관, 내·외부를 자연 친화적이며 기능성이 강화된 고효율적인 공간으로 계획
- 나) 건축물의 마감재 등은 지역성과 전체적인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에너지효율 및 유지관리에 우수하며, 변형, 변색 등이 적고 경제적인 외장마감재를 계획
- 다) 화려하고 다채로운 컬러를 지양하고 통일성이 부여된 디자인 입면을 창의적으로 구현
- 라) 과도한 유리재료(전면 유리)의 사용으로 에너지 손실이 되지 않도록 하고, 창호는 자연환기가 최대화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단면계획

- 가) 공간의 용도 및 각 실별 기능에 부합한 계획
- 나) 변화에 대응 가능한 구조 및 설비가 가능한 계획
- 다) 로비, 휴게 공간의 충분한 층고 계획으로 대공간의 공간감 확보

5) 설비계획

- 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합리적·경제적 설비시스템 계획,

오염물질배출 최소화, 시공성 향상 등을 고려하며, 관련법규 및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타 공종과 협의하여 설비설계를 계획한다.

- 나) 모든 설비계통은 품질 및 성능을 신뢰할 수 있는 신기술, 신공법(국토교통부 인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최신 시설과 품질관리, 철저한 안전시공, 예산절감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다) 제연설비 설치대상 여부의 판단이 명확한 평면구조로 계획한다.
- 라) 각 실 등에는 실에 맞는 화재방지, 소화설비, 피난 및 경보시설 계획이 반영되어야 한다.
- 마)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설비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기준으로 설계한다.

6) 구조계획

- 가) 건물의 기능에 부합함과 동시에 지진력 등 외력에 효율적인 구조계획으로 안전성, 경제성 및 건물의 구조적 합리성을 추구하여 건물 골조의 구조미를 최대한 추구하도록 계획한다.
- 나) 구조설계기준은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국내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외국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1) 적용규정

- 건축법 및 시행령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설계기준
- 콘크리트 구조 설계기준 및 해설(한국콘크리트학회)

(2) 기능이 적절한 구조와 하중을 고려한 층별(업종별) 배치계획

(3) 내진설계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

(4) 경제적인 구조

- (5) 장비 등으로 인한 바닥하중을 고려하여 향후 처짐에 대비한 구조검토를 하며 진동에 민감한 바닥구조 등의 경우는 바닥진동을 고려하여 거주자의 편안함과 건물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설계할 것

(6) 대지의 지반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근거하여 지반에 적합한 구조가 되어야 함.

7) 외부공간계획

- 가) 건축물의 용도에 부합되고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조경계획이 되도록 하며, 각종 법률, 조례 지침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 나) 건축물과 주변 환경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건축설계자의 의도가 부합되도록 하고, 향후 사후관리를 고려한다.

다) 녹지공간 등은 이용자는 물론 주변 거주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계획한다.

라) 이용자 및 인근주민의 야외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 및 시설물 배치계획을 수립한다.(**옥외휴게공간, 옥외체육시설**)

마) 장애인 및 이용자의 보행 편의성을 확보하고 건축물과 조화되도록 포장계획을 수립한다.

8) 친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계획

- 가) 자연형(Passive) 시스템 우선계획으로 쾌적성과 경제성 도모
- 나) 친환경 인증을 고려한 계획
- 다) 우수 및 중수 활용 검토계획
- 라) 지열, 태양광, 풍력에너지 등 신재생 에너지 검토
- 마) 건물의 내구성을 저하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녹화계획을 하고 건물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자연채광, 자연환기 등을 적극 도입

9) 주차계획

- 가) 주차대수는 통상 법정 주차대수 이상의 충분한 주차 공간 확보와 주차 연계성을 고려하여 이용자들이 부지 내 주차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주차동선을 계획
- 나) 주차장은 접근성, 방법,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다) 장애인, 경차, 일반, 확장형, 전기차로 계획하고 주차면 구분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라) 주차장 주출입구는 차량동선, 보행량 등 여건을 고려하여 그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 마) 차량 진출입 배치 및 동선계획을 지구단위계획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10) 방법 및 보안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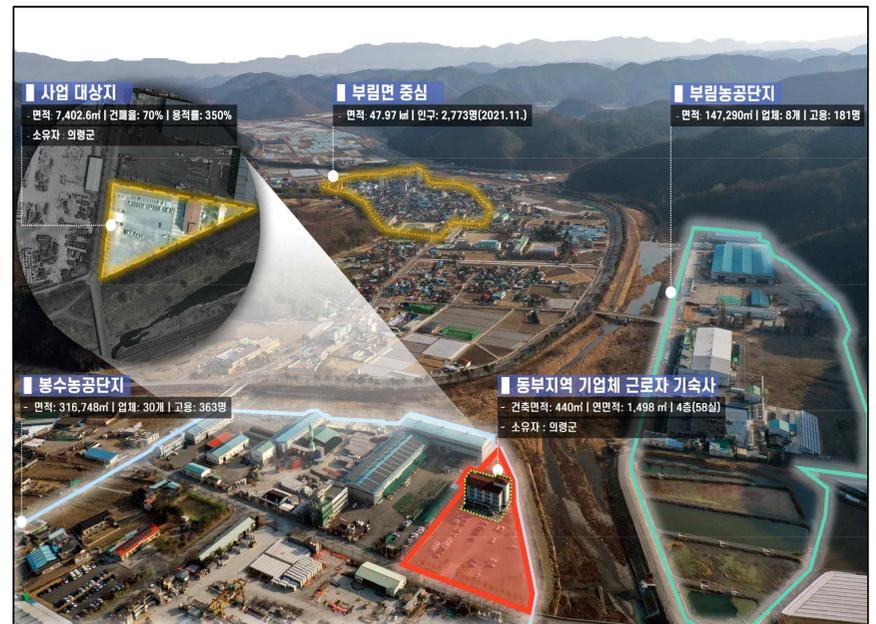
- 가) 야간 등 필요시 외부인 출입 통제가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계획한다.
- 나) 각실 출입구, 창호 등 개구부는 충분한 방법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 다) 출입구 및 방법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CCTV가 충분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등 효율적인 방법 및 보안계획을 수립한다.

다. 시설별 면적 제시(안)

층	구분	주 용 도	소요 면적(m ²)		
			실수	면적	비고
지상1층	복합 문화 센터	GX ROOM	1	49	
		HEALTH ROOM	1	110.74	
		북카페 및 편의점	1	115.02	
		1인 미디어실(3실)	3	28.50	
		다목적문화공간	1	98.77	
		회의실(2실)	2	40.88	
	공용공간		161.02	홀, 로비, 화장실, 관리실 등	
소 계				603.93	
지상2층	기숙사	기숙사(8실)	8	167.20	1인1실(20.90m ² /화장실 포함) 필요가구(침대, 책상, 옷장등)
		공용공간		120.08	휴게공간, 복도 등
	소 계				287.28
지상3층	기숙사	기숙사(8실)	8	167.20	1인1실(20.90m ² /화장실 포함) 필요가구(침대, 책상, 옷장등)
		공용공간		120.08	휴게공간, 복도 등
	소 계				287.28
합 계				1,178.49	
육외공간		육외휴게공간, 다목적체육공간(제안)(36M X 20M) (테니스, 농구장, 베드민턴 겸용), 주차장(50대 이상)			

- ※ 각 시설의 (층별) 배치, 층수는 연면적 범위 내에서 공간의 기능적 연계와 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자가 합리적으로 제안하되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계획할 것. (허용범위 : 연면적의 ± 5 %)
- ※ 실별 계획에서 설계 중 제시된 면적을 수정하거나 추가 또는 감소시킬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 승인을 받을 것.
- ※ 제시된 공용면적은 참고사항이며, 연면적의 30% 이상 확보를 권장하고, 서비스 및 동선 공간 외에 기계, 전기실 등 설비 공간(층면적의 3~5% 이내)을 포함.
- ※ 공용공간의 비율 산정은 공용공간, 기타 공용공간(홀, 엘리베이터, 계단, 화장실, 창고)을 포함하여 총 공용공간으로 산정하되, 주차장은 제외함

라. 부지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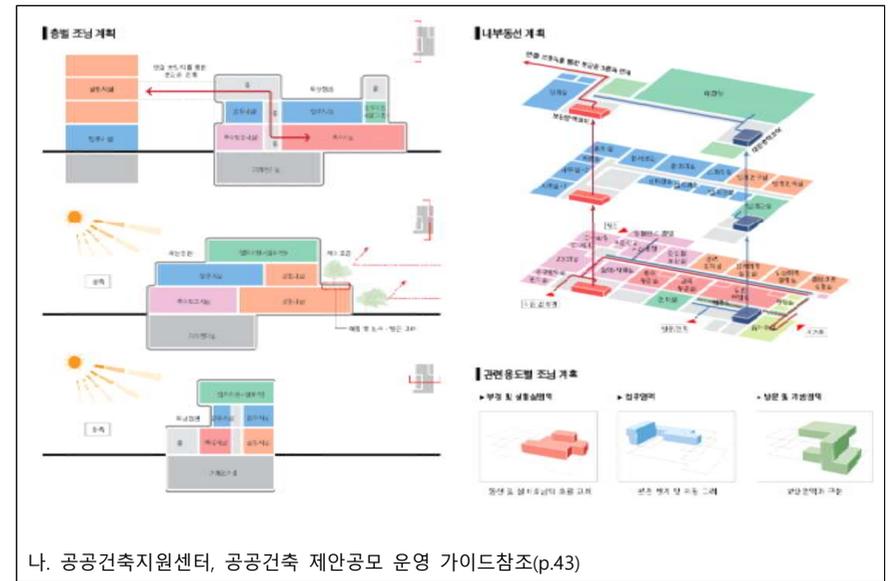
IV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공모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

- 가. 제출도서는 좌철(접착) 제본
- 나. 제출도서의 본문 내용은 찾기 쉽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일련번호가 표기된 목차를 제안서 첫 부분에 기재
- 다. 제출도서 등은 수정, 변경, 보완, 반환, 추가제출, 열람 등을 할 수 없음
- 라.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하고 미터법(소수 둘째자리 까지 표기)을 사용. 다만, 영문이나 한문표기가 필요한 경우 한글과 병기
- 마.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는 자율적으로 작성 가능하나 응모자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가 표기(식)되어서는 안됨.(작품명과 위치 등 인지가능 정보 표기금지)
- 바. 과제에 대한 제안은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문장을 보완 또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러스트 이미지, 다이어그램, 유사사례 사진, 도면이미지 등 컬러사용도 가능함.(공모안에 인용된 이미지 자료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함.)
- 사. 공모안은 건축물의 3차원 이미지(스케치 포함)를 포함할 수 있음.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는 자율 작성 가능)
※ 표현 수준은 붙임자료에서 예시한 자료를 참조할 것
- 아. 설계공모 제출물에 포함될 수 없는 불허내용과 이와 유사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 처리하며, 감점대상의 모든 판단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붙임자료] 3차원 이미지 표현수준 예시

※ 배치개념도, 평면개념도, 입면개념도, 단면개념도 이미지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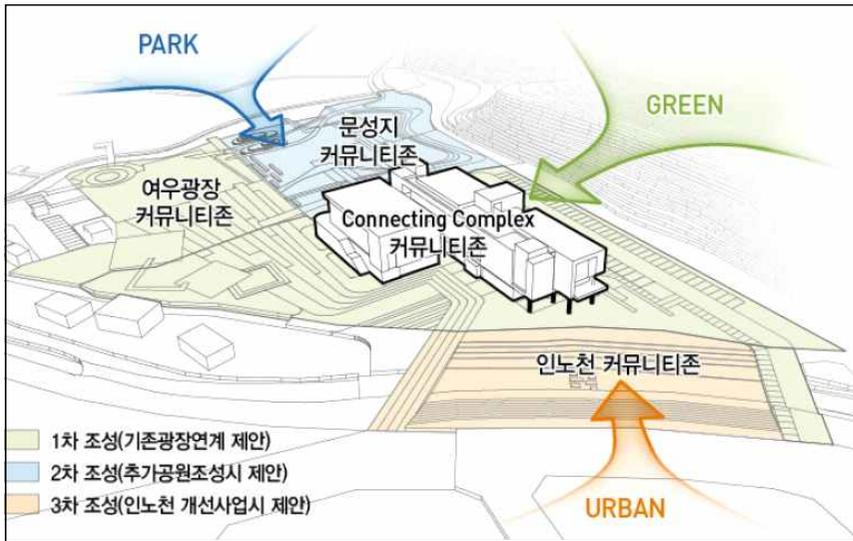
나. 공공건축지원센터, 공공건축 제안공모 운영 가이드참조(p.43)



나. 공공건축지원센터, 공공건축 제안공모 운영 가이드참조(p.35)

가. 공공건축지원센터, 공공건축 제안공모 운영 가이드참조(p.33)

※ 조감도 등이 포함된 3차원 이미지



2. 제출물의 형식과 규격 및 작성기준

가. 제안공모 제안서 구성

순서	항 목	세 부 사 항	쪽 수
1	표 지	표지<별지 12호>, 뒷면(내용없음)	2쪽
2	목 차		1쪽
4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최근 7년 이내, 2작품, 컬러가능)	2쪽 (작품당 1쪽)
5	수행계획 및 방법	○ 업무에 대한 이해도 -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기본방향 및 설계의 주안점 제시 - 과업의 범위, 관련계획 및 법령 등의 적용방안, 주요 고려 사항, 발생가능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2쪽
6		○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 - 과제1 (2쪽), 과제2 (2쪽), 과제3 (2쪽)	6쪽
7		○ 수행계획 - 단계별 작업계획 및 작업방법, 과업 수행일정표, 과업 수행체계 등	1쪽
합계			총 14쪽

※ 모든 페이지는 단면 인쇄이며, 표지, 목차도 제안서 총 쪽수에 포함됨.

나.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구 분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수행계획 및 방법, 표지, 목차
용지크기	A3(횡)	A3(횡)
여 백	- 상·하 20mm - 좌·우 25mm	- 상·하 20mm - 좌·우 25mm
글 자 체	휴먼명조체	휴먼명조체
글자크기	10미만은 사용 불가	10미만은 사용 불가
도표, 이미지	자 율	자 율
줄 간 격	자 율	160%
분 량	2쪽	9쪽
재 질	표 지	- 흰색 스노우지(무광택), A3(횡) ※ 용지무게 : 120~160g/
	본 문	- 1면 인쇄(칼라 가능) ※ 용지무게 : 80~120g/ m ²
	간 지	- 1면 인쇄, 흑백 ※ 용지무게 : 80~120g/ m ²
제본방법	A3(횡)용지 좌철(무사무선철)	A3(횡)용지 좌철(무사무선철)
제본내용 및 순서	-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2점	- 업무에 대한 이해도 -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 - 수행계획 등

- 페이지번호는 가운데 아래에 표기하며 줄표가 있는 형태를 사용한다.

· 휴먼명조체 12포인트 A3 외각 1cm상단 부근에 표기(예시 : - 3 -)

다. 제출도서의 익명성

- 1) 제안공모 제안서 표지 <별제 제12호 서식>의 “인식명칭”에는 “제안업체명”을 제안서 제출부수 15부 중 각 1부만 기재하여 별도 제출하고, 나머지 14부는 “인식명칭”란에 『의령군청 일자리경제과』로 기재 제출
- 2) 익명사용 원칙은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시까지, 설계공모 전체기간동안 유지되며, 익명 보존 방법은 다음과 같음
 - 가) 심사용 도서(설계공모 제안서)는 심사번호만 기재하고 익명 관리
 - 나) 사무소명, 응모자명이 있는 원본 도서는 심사 종료시까지 밀봉하고 공개하지 않음
 - 다) 심사위원 심사용 도서에는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 표기(식) 불가
 - 라) 심사 전 심사 관련자와 접촉하여 제안서에 대한 설명은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실격 또는 심사시 감점을 받을 수 있음

라.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1) 담당건축사의 경력 및 실적(20점)

- 담당건축사의 경력
 - 담당건축사의 경력증명서는 경력관리 수탁기관(대한건축사협회 실적증명서)의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실적증명서 상 건축설계 전체 경력을 기간으로 산정한다.
-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
 - 유사프로젝트 실적은 담당건축사의 실적(담당건축사가 참여하지 않은 실적은 제외)만 인정함.
 -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실적증명서(또는 발주기관이 확인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한다.
 -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에 용역이 완료된 실적으로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3조의5와 관련) 3.제1종 근린생활시설, 4.제2종 근린생활시설, 14.업무시설로서 건축법 제2조제1항의 ‘건축’에 해당하는 건축설계 수행 실적이어야 한다. 영문 또는 약자로 표기된 실적은 주공종을 판별할 수 있는 추가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 예) aaa project, 000기지(이전) 시설공사 등은 불인정
 - * 실적증명서에서 용도의 해당여부와 건축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 경우 응모자가 추가 증빙서류(건축협의서, 허가서, 건축물관리대장 등)를 제출하여야 실적으로 인정한다.
 - ※ 담당(책임)건축사가 수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건축사면허 취득일 이후 경력만 인정)

※ 유사프로젝트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2가지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 ① 담당건축사의 ‘대한건축사협회 실적증명서’에 기재된 실적이어야 인정
 - ② 상기 실적 중 발주기관에서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인정
- 2)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2작품(10점) (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
 - 설계개요, 설계철학과 의도, 주요 공간구성 및 사진 등
 - 포트폴리오는 대표 건축사가 실제 수행한 프로젝트(본 시설의 용도와 무관해도 됨)에 한하며, 수행사실 여부 확인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 등에 의하며, 허위사실 판명 시 실격 처리함.
 - 프로젝트 및 발주처는 익명 기재(예: 000설계용역, ***설계)
- ※ 담당건축사가 프로젝트의 대표건축사 또는 책임으로 수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마. 수행계획 및 방법

1) 업무에 대한 이해도(10점)

- 사업개요를 검토하여 과업성격을 명기하고, 과업의 범위와 내용 정의
-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관련계획 및 법령 등의 적용방안, 설계방향에서의 주요한 고려사항 등을 명기
- 사업계획, 설계 및 시공, 운영 등에 있어서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2)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45점)

- (과제1) : 주변 환경이 시설과 유기적 연계를 갖고 주변 도로 여건과 조형 조건 등을 적절히 고려한 합리적, 효율적인 배치계획
 - 주변 공원과 주차장 부지와와 적극적 연계
 - 주변 도로여건 등을 반영한 보행자와 차량, 서비스 동선처리 계획
 - 지형조건을 고려한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옥외공간 계획
- (과제2) : 입주기업 근로자와 지역주민들이 복합적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능성과 활용성, 환경성을 담아낸 공간구성계획
 - 문화, 휴게, 편의시설의 복합공간의 영역별 활용도 높은 내·외부공간 계획
 - 이용자의 성격을 반영한 기능별, 층별 조닝계획과 효율적인 동선계획
 - 각 공간별 채광, 통풍, 환기, 소음방지 등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친환경적 설계기법 도입

■ (과제3) : 산단 내 복합문화센터에 어울릴 수 있는 혁신적 특화공간구성과 창의적인 형태계획

- 혁신적 내·외공간구성 계획의 명소화
- 산단의 혁신적 형태이미지 도출
- 지속가능한 설비, 재료 및 구조계획

3) 수행계획(10점)

- 설계용역기간을 고려하여 단계별 수행계획을 세분화하여 설계일정 및 중점사항제시(과업수행일정표 형식도 가능)
- 실현가능한 일정 제시

4) 제안서 발표(5점)

- 제안서에 대한 명확한 설명 및 추진 의지의 적극성을 피력
- 질의 응답에 대한 명쾌한 대처능력

나. 심사위원회 운영

- 1)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통할함
- 2) 위원회는 심사위원 중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며, 심사 중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3) 기밀유지
 - 가) 심사와 관련된 일체의 내용은 위원회의 최종 결정시까지 비공개로 원칙으로 함
 - 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심사위원 선정 동의 및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 위원회는 비공개로 운영되나 녹음·녹화·녹취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 보존함.
 - 라) 심사위원은 본 심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개별질의에 응답할 수 없으며, 심사결과 발표 시까지 비밀을 준수하여야 함
- 4)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가) 심사위원이 다음 각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심사에서 제척함.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심사 대상 업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나) 제안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에게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기피신청 <별지 제13호 서식>을 할 수 있음
 - 다) 심사위원은 회피사유에 해당하면 회피신청서 【<별지 제13호 서식>를 제출하고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함

V 제안공모 심사 및 평가

1. 심사위원회

가. 심사위원회

- 1) 구성인원 : 총 7명(위원 5명, 예비위원 2명)
- 2) 심사위원

구 분	이름	소속	비고
1	유방근	경상국립대학교 건축학과	
2	운영채	공간 종합건축사사무소	
3	강인철	창원문성대학교	
4	남상완	사람과건축사사무소	
5	양현숙	모두양현숙 건축사사무소	
예비1	한영식	한 건축사사무소	
예비2	정은희	디자인락 건축사사무소	

라) 기피 및 회피 신청(기한 엄수)

- 심사위원의 기피 신청 : 참가등록 전
- 심사위원의 회피 신청 : 제안서 심사 전
- 기피 및 회피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swatryu@korea.kr) 신청
 - 접수처 : 의령군청 일자리경제과
 - ※ 이메일 신청 시에는 원본을 심사 당일 별도로 제출해야 함.
- 기타사항 : 신청기한 당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미제출 시 기피 또는 회피 신청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함.

2. 제안서 평가기준

가. 제안공모 심사방법 : 심사는 제안서 발표(PPT발표 10분 + 질의응답 10분)

나. 평가항목별 배점 기준

1) 정량적 평가 :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20점)

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기 준										
계	20											
담당건축사의 경력	10 (발주기관 평가)	· 담당건축사의 경력 <table border="1"> <tr> <td>7년 이상</td> <td>5년 이상</td> <td>3년 이상</td> <td>2년 이상</td> <td>2년 미만</td> </tr> <tr> <td>10</td> <td>9</td> <td>8</td> <td>7</td> <td>6</td> </tr> </table> ※ 건축사면허취득일 이후 경력만 인정	7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2년 이상	2년 미만	10	9	8	7	6
		7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2년 이상	2년 미만						
10	9	8	7	6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10 (발주기관 평가)	· 유사 프로젝트 실적 <table border="1"> <tr> <td>5건 이상</td> <td>4건</td> <td>3건</td> <td>2건</td> <td>2건 미만</td> </tr> <tr> <td>10</td> <td>9</td> <td>8</td> <td>7</td> <td>6</td> </tr> </table> ※ 유사프로젝트 실적은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 중 '3.제1종 근린생활시설, 4.제2종 근린생활시설, 14.업무시설로서 신축에 해당하고 연면적 600㎡ 이상인 사업으로, 설계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 완료된 설계 용역에 한함. ※ 실적관리 수탁기관(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실적관리증명서)또는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함	5건 이상	4건	3건	2건	2건 미만	10	9	8	7	6
		5건 이상	4건	3건	2건	2건 미만						
10	9	8	7	6								

2) 정성적 평가 : 수행계획 및 방법(80점)

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기 준																								
계	80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10 (심사위원 평가)	· 설계의 작품성, 창의성 등 <table border="1"> <tr> <td>A</td> <td>B</td> <td>C</td> <td>D</td> <td>E</td> </tr> <tr> <td>10</td> <td>8</td> <td>6</td> <td>4</td> <td>3</td> </tr> </table> ※ 2작품 제출(최근 7년 내)	A	B	C	D	E	10	8	6	4	3														
		A	B	C	D	E																				
10	8	6	4	3																						
업무에 대한 이해도	10 (심사위원 평가)	· 업무내용 및 추진배경 등에 대한 이해도 <table border="1"> <tr> <td>A</td> <td>B</td> <td>C</td> <td>D</td> <td>E</td> </tr> <tr> <td>10</td> <td>8</td> <td>6</td> <td>4</td> <td>3</td> </tr> </table>	A	B	C	D	E	10	8	6	4	3														
		A	B	C	D	E																				
10	8	6	4	3																						
과제에 대한 제안 (3건)	45 (심사위원 평가)	· 제안과제의 적절성, 창의성, 독창성, 실현성 등(과제당 점수 합산) <table border="1"> <tr> <td>구분</td> <td>A</td> <td>B</td> <td>C</td> <td>D</td> <td>E</td> </tr> <tr> <td>과제1</td> <td>15</td> <td>12</td> <td>9</td> <td>6</td> <td>3</td> </tr> <tr> <td>과제2</td> <td>15</td> <td>12</td> <td>9</td> <td>6</td> <td>3</td> </tr> <tr> <td>과제3</td> <td>15</td> <td>12</td> <td>9</td> <td>6</td> <td>3</td> </tr> </table>	구분	A	B	C	D	E	과제1	15	12	9	6	3	과제2	15	12	9	6	3	과제3	15	12	9	6	3
		구분	A	B	C	D	E																			
과제1	15	12	9	6	3																					
과제2	15	12	9	6	3																					
과제3	15	12	9	6	3																					
수행계획	10 (심사위원 평가)	· 공정계획의 타당성, 과업수행체계의 적절성 등 <table border="1"> <tr> <td>A</td> <td>B</td> <td>C</td> <td>D</td> <td>E</td> </tr> <tr> <td>10</td> <td>8</td> <td>6</td> <td>4</td> <td>3</td> </tr> </table>	A	B	C	D	E	10	8	6	4	3														
		A	B	C	D	E																				
10	8	6	4	3																						
제안서 발표 및 면접	5 (심사위원 평가)	· 추진과정의 합리성, 추진의지의 적극성 등 <table border="1"> <tr> <td>A</td> <td>B</td> <td>C</td> <td>D</td> <td>E</td> </tr> <tr> <td>5</td> <td>4</td> <td>3</td> <td>2</td> <td>1</td> </tr> </table>	A	B	C	D	E	5	4	3	2	1														
		A	B	C	D	E																				
5	4	3	2	1																						

※ 공모 제출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심사대상수	등 급				
	A	B	C	D	E
2	1		1		
3	1	1	1		
4	1		2	1	
5	1	1	2	1	
6	1	1	2	1	1
7	1	1	2	2	1
8	1	2	3	1	1
9	1	2	3	2	1
10	1	2	4	2	1
11	1	2	5	2	1
12	1	3	5	2	1
13	1	3	5	3	1
14	1	3	6	3	1
15	2	3	6	3	1
16	2	3	6	3	2
17	2	3	7	3	2
18	2	4	7	3	2
19	2	4	7	4	2
20	2	4	8	4	2

※. 실격 및 감점 기준

위반내용	실격 및 감점기준	감점 한도	비고
· 제출도서의 규격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실격(심사제외)		
· 제안서에 해당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등 (단, 제안서 15부 중 1부는 제외)			
· 익명성 유지의 원칙 등 공정한 평가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 행위를 할 때			
· 직간접적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 심사 전에 심사관련자와 접촉하여 설명을 한 경우			
·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나 과제 누락 등 중대한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 기타 실격 해당 사항 ※ 제반 법적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시			
· 설계공모 작성 일반사항(가~마 항목)	0.5점 / 항목당	3점	
· 설계공모 제안서 구성	0.5점 / 쪽당	3점	20쪽 기준
·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0.5점 / 항목당	3점	
· 제출부수 부족 시	0.5점 / 부당	3점	

다. 심사 방법

1) 심사방법

- 가) 심사대상이 되는 공모안을 심사위원회 개최일로부터 최소 3일전까지 심사 위원에게 미리 교부하여 사전에 검토하도록 함
- 나) 심사에 관하여 규정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 다) 공모안에 대한 심사위원의 심사의견, 심사과정에서 공모안이 심사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그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작성 하여야 하며,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함
- 라) 발주기관등(발주기관등이 대리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대리인)은 심사 위원회에 참여하여 심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음
- 마) 심사위원회는 해당 설계공모안에 대하여 제출자의 발표를 듣고 평가에 반영함
- 바) 심사위원회에는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며, 참석 심사위원이 과반수 미만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함

- 사)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80점으로 하며, 심사결과 정량적 평가점수와 정성적 평가점수를 더한 종합점수 고득점 순으로 3작품 이내 입상작을 선정함.
 - 담당건축사의 경력,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실적 등 정량적 평가(20점)는 제출된 자료에 의거 발주기관에서 사전평가하고, 간사가 점수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최종평가점수에 반영
 - 정성적 평가(80점)는 심사위원들이 심사 당일 평가
 - 아)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산술평균한 점수가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자) 감점은 심사위원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한 점수에서 감점 차) 공모(안)의 최종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 중 최고 점수를 당선작으로 선정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접수자의 수에 따라 차점자 및 다음 차점자를 우수작, 가작으로 선정할 수 있음
 - ※ 심사위원회 의견에 따라 차점자에 해당하더라도 우수작 또는 가작 선정을 하지 아니 할 수 있음.
 - 카) 설계공모 목적과 내용에 적합하지 않거나 제안서 수준이 현저히 떨어져 당선작이 없다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경우에는 당선작 없이 입상작만을 선정할 수 있음.
 - 타) 심사위원은 본 설계공모와 관련 어떠한 경우라도 개별질의에 대하여 응답할 수 없으며, 심사결과 발표 시까지 비밀을 유지해야 함
- 2) 실격기준
- 공모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심사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모안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가) 제반 법적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시
 - 나) 제출도서의 규격 등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 다) 제출도서에 해당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번호, 기호 등이 포함된 경우 등
 - 라) 익명성 유지의 원칙 등 공정한 평가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 행위를 할 경우
 - 마) 직간접적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 바) 심사 전에 심사 관련자와 접촉한 경우
- 사)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나 과제 누락 등 중대한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 아) 응모안 제출 후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를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 자) 저작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차) 다른 공모에 제출된 제안서를 재 출품한 경우
- 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심사위원회가 실격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3) 불이익 처분방법

- 가) 감점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의 확인을 거쳐 심사시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하여 평가에 반영함.
- 나) 실격 및 감점사항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결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으며, 기타 불이익 처분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조정할 수 있음

4) 심사결과 발표 및 공모안 반환

- 가) 심사 결과의 발표 및 공개
 - 심사결과는 심사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에 한하여 의령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함.
 - 제안공모 참가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결과 공개 후 7일 이내에 우리 군에 요청하여야 하며, 제안공모 참가자가 요청할 경우 요청자와 관련된 자료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음
 - 제안공모 참가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나) 공모안 반환
 - 입상작(당선작, 그 밖의 입상작)은 반환하지 않음
 - 입상작에 포함되지 않은 공모안은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출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제안공모 참가자가 부담하고, 기간 안에 반출되지 아니한 공모안은 발주기관 등이 임의 처리하며, 응모자는 임의 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입상작 선정 및 시상

- 가) 입상작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우수작, 가작)으로 구분함.
- 나) 입상작은 심사결과 종합점수 고득점 순으로 3작품 이내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며, 당선작은 입상작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작품으로 결정함
- 다) 입상작 보상(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 포함)
 - 당선작 1점 : 기본 및 실시설계권 부여
 - 기타입상작 2점(우수작 1, 가작 1) : 보상금 지급
 - ※ 당선작을 제외한 공모심사순위가 높은 순으로 700만원, 400만원을 각각 지급함.
 - ※ 응모 작품수가 4개 이하인 경우 당선작, 우수작만 선정
- 라) 개별통지 후 당선작을 제외한 기타 입상자(우수작, 가작)가 특별한 사유 없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모안의 작성비용에 대한 보상요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6) 심사결과 발표

- 심사결과는 의령군청 홈페이지(<http://www.uiryeong.go.kr>) 공고/고시란에 공개

7) 입상작 선정 및 시상

- 가) 입상작은 3점 이내로 선정하며, 당선작은 입상작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작품으로 결정함.
- 나) 입상작 보상(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 포함)

구분	제출자 3인 이상	제출자 5인 이상	비고
내용	- 2등(우수작) : 700만원	- 2등(우수작) : 700만원 - 3등(가작) : 400만원	당선작 : 기본 및 실시설계권 부여

8) 제출 공모안에 대한 저작권재산권

- 가) 입상작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설계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 나) 발주기관 등은 심사결과를 발표한 후 미입상작에 대한 각 공모안을 참가자에게 반환함.
- 다) 공모안 접수는 심사결과 입상작(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입상작에 대한 저작권재산권을 의령군에 양도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봄.

라) 입상자(당선자 및 기타 입상자)는 심사결과 발표 후 입상작품 양도 동의서<별지 제17호 서식>를 의령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저작권법 제45조에 따라 입상작(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의 저작권재산권이 의령군에 양도됨.

마) 입상작을 제외한 공모안에 대해 저작권법 제46조에 따라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아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음.

9) 기타사항

가) 본 건축설계 제안공모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공모안’은 「건축설계 공모 운영지침」 제2조에 따라 정의하며, ‘제안서’와 동일한 의미임.

나) 발주기관은 공모안이 설계지침서 등에서 요구한 조건에 맞는지를 사전 확인하며, 공모안이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조건을 위배하여 심사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공모안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이 경우 공모안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사유서를 참가자에게 별도 통보함.

다)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재공고 후에도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 발주처의 결정에 따라 진행함.

라) 응모자는 설계공모에 참가 등록함으로써 이 지침서의 내용을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함.

마) 본 지침서의 문구 해석상 응모자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의령군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의령군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10) 당선 이후 조건

가) 계약

(1) 당선작에 대한 설계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의 계약 규정에 따름(계약 체결 시 낙찰율 등에 의한 감액이 있을 수 있음)

(2) 당선자는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등 해당 설계업 면허가 없는 경우 관련법에 의한 적격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하여야 함.

(3) 본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당선자가 제출한 서류 및 작품의 건물면적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건축 설계용역 계약 및 수행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할 경우 설계권을 취소할 수 있으며, 당선작에 대한 사용권한은 의령군이 갖음.

(4) 당선자는 당선작으로 선정된 사실을 통보받은 후 신속히 의령군과 설계용역 계약을 진행하여야 하며 15일 이내 계약하지 않을 경우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5) 당선자가 설계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당선자의 사정으로 기본 또는 실시설계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2등(우수작), 3등(가작)에게 순차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음.

이 경우 이미 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상금 금액만큼 공제한 금액을 설계비로 지급함.

(6) 당선자로 결정된 후 계획 변경 등 의령군의 사정에 의하여 용역이 중단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용역 공정률의 정도에 따라 용역비를 지급함.

(7) 당선자가 실시설계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비(설계비)의 과다 증가를 유발하여 발주처가 당초 예산으로 사업수행이 어려울 경우 공모신청 내용의 허위사항으로 간주하여 당선에 따른 설계권을 취소하는 등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음.

(8) 설계용역 계약자는 실시설계 완료 후 총공사비의 증가로 인한 추가 용역비는 요구할 수 없음.

(9)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은 별도의 과업지시서 또는 지침에 의함. (설계계약 시 과업지시서 또는 지침 등이 수정될 수 있음)

나) 설계 진행

(1) 본 설계공모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것으로 당선자는 진행 과정에 따라 의령군과 협의하며, 자문위원회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를 추진 하여야 함.

(2) 당선자는 심사위원회의 지적사항, 발주부서의 요구사항 등을 종합하여 당선작에 대한 설계변경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설계시 이를 보완, 수정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변경 없이 기본 및 실시설계에 이를 반영하여야 함.

(3) 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설계수정, 변경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4) 의령군의 기본 방침 또는 운영 방침이 변경되어 설계의 전면적인 취소 또는 설계내용의 부분적인 수정이 필요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함.

- (5) 기본 및 실시설계 과업기간 중에 시행하는 각종 영향평가, 기술심의, 실시계획인가 등 관련법 규정을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의령군(감독관 등)이 요구하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각종 보고회 개최 등 과업으로 지시하는 전반적인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6) 설계 중 각종협의, 관련절차이행(BF인증, 기술심의, 건축협의 등) 및 발주처 사정 등으로 과업이 지연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설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7) 사업진행에 필요한 각종 용역, 심의, 인·허가 협의사항에 수반되는 설계도서 및 자료는 의령군에 적기에 제공하여야 함
- (8)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설계의도구현)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건축 과정에서의 설계자참여 기준 등)에 의거 공사 전과정에서 적극 참여하여 설계자의 의도가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하여야 함.

다) 사업의 변경 및 해지 등

- (1) 과업수행 중이라도 정부 또는 의령군의 계획변경, 심의 미통과, 기타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인해 설계용역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 또는 변경, 계약 해지할 수 있음.
- (2)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름

VI 각종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응모신청서
- <별지 제2호 서식> 담당건축사 선임계
- <별지 제2-1호 서식> 공동응모 대표사 선임계
- <별지 제2-2호 서식> 대표자 선임계
- <별지 제3호 서식>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 <별지 제4호 서식> 공동응모 협정서
- <별지 제5호 서식> 청렴서약서
- <별지 제6호 서식> 각서
- <별지 제7호 서식> 사용인감계
- <별지 제8호 서식> 위임장
- <별지 제9호 서식> 설계공모 서면 질의서
- <별지 제10호 서식>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서
- <별지 제11호 서식>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 <별지 제12호 서식> 설계공모 제안서 표지
- <별지 제13호 서식>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별지 제14호 서식> 사전접촉 금지서약서
- <별지 제15호 서식>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 <별지 제16호 서식> 평가위원별 평가표
- <별지 제17호 서식> 입상작품 양도 동의서

<별지 제1호 서식>

건축설계 제안공모 응모신청서			
※ 접수번호			
대표 설계 사무소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건축사)		생년월일
	소재지 (우)		e-mail
공동 응모 업체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우)		e-mail
전화번호 (FAX번호)			
의령군에서 시행하는 「부림·봉수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 제안공모에 있어 설계공모 지침 및 공고문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합니다. 첨부 :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1부. ※ 공동응모자가 2개 업체 이상일 경우 공동응모협정서 <서식4>을 첨부함. 20 신 청 인 : (대표자) (인)			
의령군수 귀하			

절 취 선

건축설계 제안공모 응모신청 접수증			접 수 인
※ 접수번호			
소재지			
업체명	전화번호 (FAX)		
대표자 (건축사)	접 수 자		

접 수 일 : 2022. . . .

<별지 제2호 서식>

담당건축사 선임계

설계사무소 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민번호 뒷자리 생략)	
담당건축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번호 뒷자리 생략)	
전화번호			

상기인을 의령군에서 시행하는 「부림·봉수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의 건축설계 제안공모에 응모하는 담당건축사로 선임합니다. (담당건축사는 공동응모 회사에 소속된 건축사여야 한다.)

20

- | | | |
|--------------|-----|-----|
| 1. 확인자 : 업체명 | 대표자 | (인) |
| 2. 확인자 : 업체명 | 대표자 | (인) |

의령군수 귀하

<별지 제2-1호 서식>

공동응모 대표자 선임계

본인은 ○○○건축사사무소의 대표로서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부림·봉수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의 건축설계 제안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본 공동수급 대표자 ○○○에게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응모 대표자 상 호 :
 주 소 :
 성 명 : (인)

공동응모 응모자 상 호 :
 주 소 :
 성 명 : (인)

의령군수 귀하

<별지 제2-2호 서식> *동일한 건축사사무소에 대표건축사가 2인 이상인 경우 작성

대표자 선임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본인은 ○○○건축사사무소의 공동대표로서 의령군에서 시행하는 「부림·봉수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의 건축설계 제안공모와 관련하여 상기인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제안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 불 입 : 공동대표임을 증빙하는 서류

20 . . .

업 체 명 : ○○○○건축사사무소
 공동대표 성 명 : (인)

의령군수 귀하

건축설계 제안공모 참여자 명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주소	전화번호

본인은 의령군에서 시행하는 「부림·봉수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 제안공모에 공동 응모함에 있어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응모대표자로서 참여자 명단을 제출합니다.

20 . . .

응모대표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의령군수 귀하

공동응모협정서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부림·봉수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 제안공모를 ()와 ()가 공동으로 응모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 업체 및 개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응모 대표업체(이하 대표업체와 같다)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은 다음과 같다.

1. 업체명 :
2. 소재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 (공동응모의 구성원) 대표업체(자)를 제외한 공동응모업체(자)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2.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제4조 (대표업체의 권한) 대표업체(자)는 주관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응모업체(자)의 구성원을 대표하여 문서의 제출 및 수령, 권리의 획득 및 포기 등에 관한 의사 표시 권한을 가진다.

제5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공모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당선작으로 결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할 경우에는 실시설계 종료 후 종결된다.

제6조 (의무) 공동응모업체(자)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7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구성원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끼친 손해를 구성원 상호간 협의하여 배상한다.

제8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제9조 ①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하거나 그 일원의 탈퇴로 응모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응모작품을 제출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즉시 서면으로 신고하며, 탈퇴업체(자)를 다른 업체(자)로 교체할 수 없다.

제10조 (협정서 작성 및 보관) 위와 같이 공동응모 협정서를 체결하고 그 증거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협정서에 구성원이 기명날인 후 각각 보관한다.

20

○ 대표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 공동응모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의령군수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청 렬 서 약 서

본인은 의령군에서 시행하는 「부림·봉수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 제안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설계공모 지침 등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제출서류 전반에 대한 허위기재 및 불공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공모 및 심사 전과정에서 심사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심사위원이나 귀 기관의 관계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 연락하거나 금품, 향응, 기타 어떠한 유형의 편익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공모와 관련한 응모작품 제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당선작 선정 등에 대하여는 이의 없이 귀 기관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고,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민·형사상 등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이에서 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

소 재 지 :

대 표 이 사 : (인)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

소 재 지 :

대 표 이 사 : (인)

의령군수 귀하

각 서

본인은 의령군에서 시행하는 「부림·봉수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 제안공모에 있어 귀 기관의 공모지침과 청렴서약서를 성실히 준수하고, 특히 공모와 관련한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대한 사전접촉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만일 심사위원 사전 접촉, 제반규정, 지시, 지침의 위반 및 조정 불이행 등이 발생한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공모와 관련한 제안서 제출, 심사, 평가 결과 등에 대하여는 이의 없이 귀 기관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공모참가자(성명) :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상기인은 위 인감을 의령군에서 시행하는 「부림·봉수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 제안공모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의령군수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위 임 장

공 모 명 : 「부림·봉수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 제안공모

대리인(수임인)

- ① 소 속 : (직위/직급 :)
 ② 성 명 : (생년월일 :)
 ③ 주 소 :

본인은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의령군에서 시행하는 「부림·봉수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 제안공모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위 임 인

- ① 업 체 명 :
 ② 대표자 성명 : (인) (생년월일 :)
 ③ 연 락 처 :
 ④ 주 소 :

※ 첨부 : 대리인(수임인) 재직증명서 1통.

20

의령군수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건축설계 제안공모 서면질의서

대표자 성명 (건축사)	(인)	신 청 접수번호	
설 계 사무소명		전화번호 (FAX)	()
소 재 지		e-mail	
지 침 서 (Page)	질 의 내 용		
※ 공모 지침서를 다시 한 번 숙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0호 서식>

건축설계 제안공모 제안서 제출서				
※ 접수 번호				
작품 제출자	대표 업체명		전화번호	
			F A X	
	대표자 (건축사)		생년월일	
	소재지	(우)	e-mail	
<p>의령군에서 시행하는 「부림·봉수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 제안공모에 첨부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p> <p>첨 부 : 1.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관련 자료(원본 1부) - 심사용 담당건축사의 경력 및 실적<별지 제11호 서식> - 담당건축사의 유사용역실적 증명서 2. 설계공모 제안서<별지 제12호 서식> (원본 1부, 사본 14부 총 15부) ※ 원본 : 업체명 표기 / 사본 : '의령군'으로 표기 3. 위 1, 2 내용을 저장(PDF 파일)한 USB 1매(업체명 기입) 4. 응모 신청서 접수증</p> <p style="text-align: right;">20</p> <p style="text-align: right;">신 청 인 : (인)</p>				
의령군수 귀하				

건축설계 제안공모 제안서 접수증				접 수 인
접수번호		접수일시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건 축 사)		연 락 처		
제 출 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접 수 일 : 2022.

<별지 제11호 서식>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성 명			
생년월일			
근무처주소지	(전화번호 :)	E-Mail	(휴대폰)

자 면 허	년 월 일	종 별	인 가 번 호	인 가 기 관	
경 력	기간	근무처	부서	직위	
유 사 프로젝트 실 적	사업명(공모명)	건축연면적	입상내용	용역금액(천원)	발주처

※ 담당건축사의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의 증명서로 확인하며, 설계분야 기간으로 평가

※ 유사프로젝트 실적은 담당 건축사의 실적만 인정하되 아래의 2가지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 중 '제1,2종 근린생활시설'로, 설계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 완료(완료일 기준)된 설계 용역에 한함.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령건축사의 '대한건축사협회 실적증명서'에 기재된 실적이어야 인정 2. 상기 실적 중 발주기관에서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인정 |
|---|

평가위원별 평가표

○ 평가번호 :

구 분	평 가 내 용	점수계산방법					점수
		A	B	C	D	E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10)	- 설계의 작품성, 창의성 등	10	8	6	4	3	
업무에 대한 이해도 (10)	- 설계의 기본방향 및 주요점을 감안한 업무 수행 목표(전략)를 제시 - 설계 및 시공, 운영 등에 있어서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건축설계 측면의 개선방안을 제시	10	8	6	4	3	
과제에 대한 제안 (45)	- 주변 환경이 시설과 유기적 연계를 갖고 주변도로 여건과 조형 조건 등을 적절히 고려한 합리적, 효율적인 배치계획	15	12	9	6	3	
	- 입주기업 근로자와 지역주민들이 복합적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능성과 활용성, 환경성을 담아낸 공간구성 계획	15	12	9	6	3	
	- 산단 내 복합문화센터에 어울릴 수 있는 혁신적 특화공간구성과 창의적인 형태계획	15	12	9	6	3	
수행계획 (10)	- 건축물의 완성도를 높이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안 제시	10	8	6	4	3	
공모안 발표 (5)	- 사업 추진의지의 적극성 및 사업 책임기술자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 등	5	4	3	2	1	
총 점 수 (80점)							

※ 해당항목에 표기가 없는 경우 0점 처리

평가위원 : (서명)

입상작품 양도 동의서

대표업체	회 사 명	
	주 소	
	대 표 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의령군에서 시행한 「부림·봉수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 제안공모에서 입상한 본인(업체)의 작품을 「저작권법」 제45조(저작권산권의 양도)에 따라 의령군에 양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대표업체 업체 명 : (전화번호:)
 주사무소소재지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 공동응모업체 업체 명 : (전화번호:)
 주사무소소재지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의령군수 귀하